

[첨부1]

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제출서류

제출서류(당규 제10호 제29조)	온라인접수 시스템 상 항목
① 후보자추천신청서 1부	○ 인적사항(후보자 추천신청서)
② 서약서 1부	○ 신청자 유의사항 및 동의 - 서약서 - 공직선거후보자신청서약서
③ 매니페스토실천계획서 1부	○ 본인소개서 및 활동내역 - 매니페스토실천계획서
④ 주민등록등본 1부	○ 인적사항(후보자 추천신청서) - 주민등록등본
⑤ 당적증명서 1부	○ 증명서 및 확인서 - 당적증명서 - 당비납부확인서, 교육연수 이수확인서
⑥ 당비납부확인서, 교육연수 이수확인서 각 1부	○ 가족관계 - 가족관계증명서
⑦ 개인별 기록카드	○ 직업 및 직책 - 재직증명서
	○ 경력사항 - 여론조사용 대표경력 - 공직선거 출마경력 - 당내경선 출마경력(타당 당내경선 포함) - 사회 및 정당경력(경력증명서)
⑧ 본인소개서 1부	○ 본인소개서 및 활동내역 - 주요지지기반, 지역활동내용
⑨ 후보자등록비 납부증명서 1부	○ 본인소개서 및 활동내역 - 본인소개서
⑩ 최종학력증명서 1부	○ 증명서 및 확인서 - 심사비 납부확인서
⑪ 병적증명서 1부	○ 학력사항 - 최종학력증명서
⑫ 재산신고서 1부	○ 병역사항 - 병적증명서(본인, 배우자 및 직계비속)
⑬ 최근 5년간 소득세 세목별 과세(납세) 증명서 1부	○ 재산사항 - 재산신고서(※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, 외조부모,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)
⑭ 공직선거용 범죄경력증명서(범죄경력서약) 1부	○ 소득 및 납세사항 - 소득금액증명원 납부내역증명서 납세증명서(국세완납증명) - 지방세 납세증명서 - 자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재산세 항목 또는 미과세증명
⑮ 칼라 명함판사진 전산(jpg)파일	○ 범죄경력여부 - 범죄경력회보서 - 판결문 및 소명서(범죄 有 경우)
⑯ 그 밖에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	○ 인적사항(후보자 추천신청서) - 칼라 명함판사진 전산(jpg)파일
	○ 부동산 보유현황 및 기타제출서류 - 부동산 보유현황

[첨부2]

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여론조사 대표경력 허용기준 지침

1. 전·현직 대통령 실명 사용은 불허한다.
2. 경력 입증이 가능한 경력만 인정한다. (해당 기관·단체의 증명서 발급 기준)
 -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, 급여를 수급한 경력 2개 합25자 이내로 기입
 - 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의 경우 경력을 인정함
3. 임의적이거나 임시·한시적인 경력은 불허한다.
 - 기관 및 단체의 경력증명이 가능하더라도 존속 1년 미만인 기구·단체의 경력
 - 존속 1년 이상의 기구 또는 단체의 경우에도 임의단체와 모임은 불허
4.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 포함된 선거기구, 후원단체, 연구단체, 기념사업회 등의 영리·비영리단체의 대표경력은 불허한다. 다만, 재직증명, 법인등기부상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특정정치인의 이름은 포함할 수 없고, 최종적으로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5. 기관 및 단체의 명칭은 법적등록명칭 또는 공식명칭을 사용한다.

적용예시

- 청와대 경력은 '대통령비서실 행정관' 등으로 통일
- 김대중정부, 노무현정부, 문재인정부, 국민의정부, 참여정부, 촛불정부 등 : 불허
- ○○○선대위, ○○○선거대책위원회, ○○○선대본 등 : 불허
- ○○○를사랑하는모임 회장, ○사모 카페 운영자, ○사모 지부장 등 : 불허
- ○○○대통령후보 유세단장, ○○○대통령후보 특보 : 불허
- ○○○시·도지사, ○○○당대표, ○○○국회의원, ○○○장관 정책특보 등 : 불허
→ 국회의원 보좌관,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: 허용
-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비례를 반드시 표기함

6. 소속기관·단체명과 직함(공식적인 직위)은 함께 사용해야만 하고, 소속기관과 단체명 하나만 사용하는 것은 불허한다.

적용예시

- 경실련 임원 : 불허 →(허용) 경실련 사무처장

7. 학력, 학위의 경우 학교명과 함께 사용한다.

적용예시

- 정치학 박사 : 불허 →(허용)○○대 정치학 박사

8. 출마경력 時 당명, 선거명, 선거구명을 함께 사용한다.

- 예비후보는 불허

적용예시

- 종로구의회예비후보, 민주당 후보, 19대국회의원후보 : 불허
→(허용) 더불어민주당 현 국회의원,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
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

9. 1 ~ 8 외의 불허 · 허용기준은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의결로 정한다.